

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청원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청원자

- 주 소 : 청주시 문화동 69 - 4
- 성 명 : 대한 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 인 규

나. 소개의원

- 충청북도의회 의원 오 운 균

다.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3월 4일
- 회부일자 : 1993년 3월 6일

라. 상정일자

제8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993년 3월 9일) 상정  
소개의원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2. 청 원 요 지

- 근본적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공사금액 인 단위예정 금액을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분할 발주해 줄것을 요망

-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지역제한금액으로 분할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참여비율을 30% 이상 50% 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발주해 줄것을 요망

### 3. 취지설명 요지

《 취지설명자 : 충청북도의회 의원 오 운 균 》

충북도내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도내 건설업을 육성하여 지역경기의 부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도내 대형공사는 지역 제한금액의 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하되, 부득이 분할발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내 업체와 30% 이상 50% 이하의 비율로 공동도급하도록 발주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보고자 : 전문위원 이 청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청원서 내용은,

첫째, 공사발주시 도내 건설업체가 가장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도록 단위공사 예정금액을 20억원 이하 책정의 청원사항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한

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 제1항 및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현재 도로, 하천, 농지개량, 교통안전시설공사 등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발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청원서 내용중 분할 발주와 도내업체와의 공동도급 발주를 "반드시"라는 문구를 "가능한"으로 수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 집행 의뢰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므로서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이룩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제한경쟁 입찰 기준액 초과 공사의 대형공사 발주시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 발주 사항은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공동계약)에 의하여 계약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동 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나,

청원 내용의 도내 업체와 30% 이상 50% 이하 공동 도급비율에 의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시행된 예규,

회계 2210 - 1200 ('91. 5. 14) 호에 의한 공동계약 운용에 관한 회계통칙 지시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를 시행하기는 불가한 실정인바,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정부로 청원하여 별도의 예규시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없음

6. 토론 요지

<이광호 의원>

예정금액 20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토록 요구하는 내용중 "반드시"를 "가능한"으로  
자구를 수정

<이병두 의원>

지역 제한금액 이상으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에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30%  
이상 50%이하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문구중 50%이하로를 삭제

8. 심사결과

- 예정금액 20억원 이하로 분할 발주토록 요구하는 내용중 "반드시"를 "가능한"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
- 지역제한금액 이상으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에는 도내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30% 이상 50% 이하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문구중 " 50%  
이하로" 를 삭제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채택
- 참석위원 10명 (찬성 1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 의 건 서 》

- .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가장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는 지역 제한공사 금액인 단위공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가능한 분할발주 하도록 하여주기 바람.
  
- .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지역제한 금액으로 분할 발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은 30%이상 으로 발주 하여주기 바람.